

制度改善으로 定住圈을 造成

현행 소규모어항을 제4종어항으로 격상시키고,
도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되는
여러 부서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어항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金 昇 <新安郡水協 專務>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과거 30년간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수출관련산업의 집중육성만을 너무 강조하여 추진된 경제정책이 오늘날 산업간이나 국토공간상에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바, 특히 1차산업인 농·수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반적인 농어촌 사회문제로서는

○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업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와 노령화·부녀화의 심화

○ 도시, 농어촌간의 소득 격차의 심화

○ 농어촌 경제기반의 약화

○ 농어촌 정주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어촌엔 매년 늘어나는 빈집과 놀리는 전답, 이어(離漁)하면서 버리고 간 폐어선, 폐양식어업 자재, 빈 국민학교(분교) 등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쓸쓸스러운 어촌풍경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무척 심각한 실정이다. 바로 지금 어촌은 활력을 잃은 채 하나의 생산 생활공동체로서의 어촌자연부락들이 하나 하나 해체되어갈 위기에 봉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89년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농어촌진흥공사의 설립, 농어촌 발전기금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농발대책에 의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42조원에 달하는 과 감한 투자로 농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흡족한 생활환경속에서 젊은 후계세대가 농어촌을 담당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부 농업경제학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농업에는 어느정도 희생의 바람이 일면서 장기적으로는 활력을 되찾게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어촌에 대해서는 당국이 마련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농어촌구조개선 내용자체가

농촌·농업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어서 농촌보다 입지적, 경제사회적 조건이 열악하고 어장소유 및 이용제도 등 어촌공동체의 틀속에서 어업생산이 영위되는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는 도서지역 어촌·어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책부재 그대로라고 표현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어촌문제 하면 낙도, 벽지, 도서어촌의 문제로서 입지적으로는 우리 국토의 맨 끝 가장 자리에 위치해 교통이 불안정하고 불편하며 도시나 육지로부터 멀리 격리된 채 산과 바다로 외부와 단절된 좁은 공간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몹시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시노동자보다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어촌에 정주할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도서지역 어촌문제는 이제까지 경제의 능률성과 효율성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접근했고 세계속의 수산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그 이면에는 소외시켜온 벽지 농어촌 특히 도서어촌 지역의 개발로부터의 상대적 소외와 그간 추진해온 수산진흥시책으로 인한 도서어촌 영세 어민들의 정책으로부터의 소외가 증폭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수산업이라는 단순한 산업정책 으로서는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국토 유지보전과 도서어촌의 유지경영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대상 및 검토내용

도서지역 어촌에서 지선어민들과 그 후계세대들이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는 흡족한 생활환경속에서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서라

는 특수한 여건과 어촌(공동체)·어민과 바다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생산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한 농촌·농민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단순한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자체가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농산물의 가격정책(이중곡가제)을 지양하고 수입개방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금으로 육성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영세농의 탈농을 전제로 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어촌·수산업부분에는 어촌이나 어업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제시도 없이 수산당국이 기 추진중인 연안어장 목장화시책이 양념으로 끼어 있을 정도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농어촌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금후 예상되는 도서지역 어촌문제는 도서가 주민이 떠나버린 비어있는 섬, 버려진 땅, 황폐한 국토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2000년대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복지 도서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민들의 개별적인 투자로서는 현 여건하에서 접근이 불가하므로 그러한 지원과 투자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정부당국이 먼저 해줘야 할 부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로 도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열악한 생활환경과 협소한 생활공간 특히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속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고절성과 단절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교통, 기상, 상수도, 병원등등 질이 낮은 일상생활자재를 어떻게 2000년대 정부가 구상하는

활력이 넘치는 육지농촌 수준으로 삶의 질을 제고 시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로 어촌공동체(어촌자연부락)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해 해조패류 등 양식어업권어장과 공동어업권어장의 법률상의 소유 및 이용제도와 전래의 어업관행 관습등의 불일치에서 오는 어장의 총체적 생산력저하와 불안정성을 어떻게 어촌의 전통관습 관행의 기반위에서 어장의 집단관리 등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총체적인 어장의 생산력증강과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규모의 확대와 도서어촌지역사회의 유지 기능을 제고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점

이 두가지 문제를 정부당국이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할 과제로 정리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그에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첫번째 검토사항으로는

○ 도서지역 어촌정주권 조성 과 어항제도

두번째 검토사항으로는

○ 도서지역 어촌·어민과 어업생산관계 제도

① 어촌자연부락 지선어장과 관련어업제도의 개선

② 어업생산조직의 육성과 수협조직의 재검토

③ 공동어장의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

II. 도서지역 어촌사회의 문제점과 과제

1. 도서지역 어촌의 입지 환경과 어항

도서지역 어촌은 육지농촌과 비교하여 본토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과 넓은 바다로 독립된 좁은 공간으로 단절되

〈표 1〉

어 항 현 황

항 수	어항법상 지정 어항						비 고
	계	수 산 청 장			시도지사	소 규 모	
		소 계	제1조어항	제3종어항	제2종어항	어 항	
1,987	399	83	50	33	316	1,598	소규모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

어 있어 특히 교통이 불안정하고 불편하며 정주공간으로서도 협소하고 비교적 적은 면적이 소요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입지로서도 적정규모에 미달된다.

그리고 어촌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시·군의 일부지원을 받아 지선민의 자담과 노력부담으로 축조된 소규모어항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전천후 정기교통망을 체계화하는 기본시설로서는 미흡하며 소형어선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미비된 채로 있다.

오늘날 농어촌과 1,2차 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도시의 사무직이나 3차산업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도서라는 특수한 공간속에서 외부와 단절되고 독립된 좁은 공간과 교통, 기상, 병원 등 일상생활자체가 불편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도서어촌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본다면 모두 부정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지역 어촌문제의 핵심요체는 넓은 어항구역을 포함한 어항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다양화로 지선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기능과 편의시설 내지 휴식공간이 보존되고 전천후 교통망 체계를 완비하여 고질성과 단절성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항수와 어항의 종류는 〈표 1〉

과 같으며 여기에서 보면 1992년 3월 현재 어항법으로 지정하여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1·3종어항 83개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 316개, 도합 399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항법으로는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제1종 어항에 해당하는 지선어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항포구가 1,596개로서 전체 항수 1,987개항의 8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어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촌지역 주민숙박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이나 특별한 개발계획 없이 우선 소형어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일부지원과 지선민의 일부자담에 노력부담으로 임시만들어진 시설이므로 근본적으로 불편한 교통 및 일상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와 어업근대화 추진과정에서 어촌(어민)과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면서 근·원양어업의 개발이 이루어진 이중구조하에서 발생한 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진흥을 효율성 제고에만 기준을 두고 추구했던 산업정책을 어촌 및 연안어업 안정과 어민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다. 붕괴위기에 처한 어촌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낙도, 벽지,

도서지역의 문제로서 일본과 같이 어항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다양화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어항하면 단순히 전국어민이 이용하는 어업전진기지항이나 긴급대피항과 같이 지선어촌·어민보다는 바다의 효율적 이용과 통제 위주로 개발하고 관리되어 왔으나 금후 개발방향은 어촌·어민의 유지보존과 국토의 유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어항법하의 기본어항(제1종 어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기본계획하에서 시설투자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선어촌민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항포구 단위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 어항시설 중·장기투자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적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우리 국토의 맨끝 변방에 위치한 도서어촌·어민의 문제는 수산업이라는 산업정책으로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국토의 유지보존과 어촌 유지경영이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어항법을 개정하여 현행 소규모어항을 어항법하의 지정어항으로 편입시켜 중앙정부 투자계획에 의거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Ⅲ. 개선방향

1. 도서지역 어촌정주권 조성과 어항제도

당국이 적극 추진중인 농발대책은 전국 농

어촌 지역의 면소재지를 정주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복지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자체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농촌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도서지역 어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촌과는 달리 특히 도서어촌은 도서가 갖는 자연적, 사회적,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정주생활권 기반조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정주생활권을 일률적으로 면소재지를 거점으로 하여 농촌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단순시책으로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서지역 어촌의 정주권조성은 해당 도서의 자연지리적 산업입지적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의 개발전략이 나올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항시설의 확충과 그 기능의 다양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1988년 10월 일본 벵지 도서어촌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우리의 경우는 생각도 미치지 못할 지선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어항을 어항법상 제1종어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넓은 어항구역의 확보와 확대개발에 의한 각종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어항시설이 모체가 되어 어촌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이도어촌의 공동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본토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도어촌을 국토보존과 어촌유지경영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도서어촌의 정주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선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어항을 어항법상 제1종어항(기본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관리토록 하고, 어항의 기능도 해당 지선어민의 어촌정주여건 조성의 핵심요체인 전천후 해상정기교통망 체계는 물론 공중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시설로서 헬기장을 포함한 넓은 어항구역의 확보와 그 어항구역내에 각종 기능 및 복지 편의시설 휴식공간까지 확충하여 좁은 의미의 어항기능 외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도진흥법 등 권역별로 이도개발을 촉진하는 관계법령의 제정과 총리부 고시로 이도를 개개 도서단위로 지정하여 용역과 검토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접근방식으로 도서지역을 중점 개발함으로써 지난 30~40년 동안에 전 이도어촌을 교통, 전기,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기본 수요가 본토의 농어촌보다 훨씬 더 충족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속에서 연안어장의 목장화, 수산물 가공산업과 지역 특산품

육성, 이도어촌의 관광화 등 다양한 어촌소득원이 개발되어 오히려 본토의 농촌보다 이도어촌에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낙도개발전략을 참고로 하여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0명이상 상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일본에 비해 35년 정도 뒤늦은 정책이나 섬이라는 특정 소외지역 어촌을 특별법에 의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데 크나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지역 어촌은 본토의 농촌지역과는 달리 흑산도, 백령도, 조도 등 고도군도의 경우에 모도와 자도로 구분하여 모도를 도시형으로 개발해서 정주권 중심으로 하고 자도와 연계시키는 개발전략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개개 도서자체가 사방이 바다로 고립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고질성과 단절성의 최소화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본토 농촌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생활여건을 조성해 주는 개발전략이 동시

<표 2> 일본의 어항법상 어항의 종류

지정항 종류	지정 기준이 되는 규모	비 고
제1종 어항	지선민간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	한국의 경우 어항법상 미 규정
제2종 어항	현단위 지역어민들이 이용하는 중규모 어항	한국의 경우 제2종 어항에 해당
제3종 어항	전국 어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어항	한국의 경우 제1종 어항에 해당
제4종 어항	전국 어민들이 이용하는 낙도 벽지 어업 근거지의 중 규모어항	한국의 경우 제3종 어항에 해당

자료 : 일본의 어항법에서 한국의 어항법과 비교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표 3〉

금후 어항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후의 어항의 종류

지정항의 종류	지정 기준이 되는 규모	지정 및 관리부처	비 고
제1종 어항	전국 어민들이 이용한 대규모 어항	수 산 청 장	현행 지정 어항
제2종 어항	도단위 지역어민들이 이용하는 중규모 어항	시·도지사	”
제3종 어항	전국 어민들이 이용하는 낙도벽지 근거지의 중규모어항	수 산 청 장	”
제4종 어항	해당지선 어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	國務總理이나 經濟企劃院 長官	신 설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낙도벽지 지선어민만이 주로 이용하는 현행 소규모 어항을 어항법상 지정어항으로 격상시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집중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낙도개발도 10명 이상의 상주도서를 대상으로 한 막연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대상 도서를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 고시로 개개 섬단위로 각각 지정 고시하고 고시된 도서별로 용역에 의해 최소한의 정주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서 하나하나를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낙토(樂土)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조성은 반드시 어항을 중심으로 넓은 어항구역의 확보와 어항기능의 다양화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투자효율과 정책 추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현행 소규모 어항을 〈표 3〉과 같이 제4종어항으로 격상시켜, 도서개발의 주관처도 주무부서가 아닌 내무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교육·교통·농수

산·건설·내무부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 관리토록 어항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Ⅳ 결 론

근대경제학의 방법론인 비교우선론과 규모 경제론에 뒷받침되는 불균형성장 경제시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상업화 내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라는 산업정책으로는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농어촌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체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에 의거 42조원의 투자재원으로 농어촌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동 시책자체가 농업·농촌 중심의 시책이기 때문에 연안어촌 어민 특히 도서지

역 어촌문제를 해결해 가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핵심요체가 품종과 전업농을 선별해서 육성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해서 농업자체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정주권중심의 정주생활여건 조성과 농업외소득원을 확충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나 이러한 개발전략이 연안지선어촌 내지 도서지역 어촌구조개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입지적, 경제사회문화적 전통과 어업관행·관습 등 특별한 여건 때문에 공동어장의 소유 및 이용관리 방법의 독특한 관행·관습과 전통의 기반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발전략이 도입되지 않는 한 낙도벽지 도서어촌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품종의 어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없다는 것을 어촌실태를 파악한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어촌이나 도서지역어촌은 여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의 농어촌구조개선시책과 같은 방향의 개발전략을 도입하려면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투자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고 투자할 방법도 찾을 수 없어 도서지역어촌은 상대적으로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취지와 관점에서 농어촌구조개선시책 추진에 앞서 먼저 선결해야 될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금후 정책당국이나 뜻있는 분들의 연구과제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서지역어촌은 도서가 갖는 입지적, 사회적, 경제적, 특수한 여건 때문에 육지농어촌과는 달리 정주생활권 기반조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반드시 어항시설의 확충과 그 기능의 다양화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접근방

식으로 도서어촌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도 일본제도를 참고로해서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소규모항을 어항법하의 지정어항으로 지정해서 그 기능까지 다양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어항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은 1953년에 낙도개발특별법인 이도진흥법을 제정하여 10여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지금도 계속 전체국민의 세금으로 도서어촌을 개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도서개발방향을 일본과 같이 개별도서를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 고시로 지정하여 섬 하나 하나를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선어촌 어민의 생업터전인 공동어장의 소유 및 이용관리 제도도 지역별 수협이 어촌·어민의 구심체가 되어 연안 항포구별로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관련어촌부락들이 집단으로 실천하는 어업질서가 확립될때 어장의 집단관리를 통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서 연안어촌과 직접 관련된 어업권 어업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육성되어 개별도서 단위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이 뒷받침하는 활력이 넘치는 복지어촌건설의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㉞